

gTLD 분쟁해결제도 관련 매뉴얼

다음 글은 분쟁해결신청서 제출과 답변서 제출시에 변호사의 조력 없이 직접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당사자들에게 UDRP 규정 제4조와 관련하여 서류 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매뉴얼이며 대체로 WIPO가 제공한 Overview of WIPO Panel Views on Selected UDRP Questions 를 중심으로 재정리하였음을 밝힌다.

(<http://www.wipo.int/amc/en/domains/search/overview/index.html>)

I. ADNDRC 신청서(국문)

신청서는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규정) 과 통일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칙 (규칙) 그리고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의 보충규칙 (보충규칙)에 따라 작성되고 제출되어야 하므로 해당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아시안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 C에 맞추어 빈칸을 채우면 된다.

(http://www.adndrc.org/adndrc/doc/complaint_kr.doc)

그러나 신청서 작성시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법률 쟁점은 규정 제4조 a, b, c를 중심으로 전개되므로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 우선 규정 제4조 a에 따라 신청인은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모두 입증하여야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해당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1. 상표와 도메인이름 간에 동일 또는 유사성 여부

첫째,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이 자신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동일 또는 유사성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1) 분쟁도메인이름과 동일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를 보유한 사실만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가?

일반적으로 신청인이 해당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등록하고 소유하고 있다면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표지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상표 등록 장소와 등록 대상이 된 상품 및 서비스의 소재지는 관련이 없다. 그러나 아주 예외적으로 상표 등록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경우 상표등록의 정황을 검토해야 할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상표등록의 경우, 연방 관할에 반하여 주정부에서 상표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웹사이트의 내용도 관련이 있는가?

유사성 여부 판단에 있어 분쟁도메인이름 등록인의 웹사이트의 내용이 상표권자의 사업과 유사한지 여부와 관련이 없다. 이 경우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여부는 상표와 도메인이름과 비교만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일단 잠재적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이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분쟁 도메인이름을 타이핑할 경우에 상표권자의 사이트에 직접 접근할 수 없게 되므로 상표권자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3) 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상표에 옥설과 같은 부정적인 용어를 붙여 이루어진 경우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것으로 볼 것인가?

일반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상표에 욕설과 같은 부정적 단어를 결합하여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체로 도메인이름의 주요부분이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고 부정적 단어는 별다른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소수의 견해로 인터넷 이용자는 상표와 부정적 단어로 결합된 도메인이름으로부터 상표권자를 연상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예도 없지 않다.

(4) 분쟁도메인이름이 등록된 후에 신청인이 해당 표지에 대해 상표를 등록하거나 권리를 취득한 경우 신청인은 UDRP 체제상에도 상표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신청인이 상표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는 사실 만으로 동일성이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유사성을 주장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UDRP 체제에서는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가 언제 권리를 취득해야 하는지 명백히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장래에 상표가 등록될 것을 염두에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는 점은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며,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었다는 점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5) 신청인은 지리적 위치를 지정하는 단어나 용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UDRP체제하에서는 지리적 위치를 지정하는 용어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 한편, 해당 지리적 용어에 대해 신청인이 권리를 취득하였다거나 상표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보호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리적 용어를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차적 의미로서 권리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6) 신청인은 자신의 이름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UDRP체제는 개인의 이름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지 않지만, 미등록 상

태지만 개인의 이름이 상거래나 상행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신청인은 그 이름에 대해 소위 커먼로 상의 권리를 갖는 수가 있다. 이 경우 커먼로 상의 상표도용에 관한 소송에서 요구되는 기준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물론UDRP 체제하에서도 개인이름이 상표로 등록된 경우에는 보호받는다.

그러나 미등록 상태에 있는 개인의 이름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문제된 이름이 상거래나 상행위에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 단지 사업가나 종교지도자 등이 널리 알려진 이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미등록 상표로서 권리를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7) 미등록된 상표 또는 커먼로 상의 상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신청인은 무엇을 입증하여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신청인은 자신이나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문제의 표지가 식별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차적 의미의 식별력의 증거로서 해당 표지를 이용하여 판매한 기간과 양, 광고의 성격과 효과, 소비자 조사 및 미디어의 인지도 등이 포함된다. 이차적 의미가 비록 일부 지역에 극한 된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인의 커먼로상 상표권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미등록 상표에 관한 권리는 분쟁해결신청이 대륙법계 지역에서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8) 상표 사용권자나 상표권자와 연계된 회사는 UDRP체제하에 상표에 대해 권리를 갖는가?

일반적으로 상표 사용권자 그리고 등록된 상표권자의 자회사나 모회사는 UDRP체제하에서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비독점 상표 사용권자인 경우에는 UDRP 체제 하에서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않는다는 소수의견도 있다.

2. 도메인이름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의 존재 여부

둘째, 신청인은 등록인이 해당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일단 신청인이 이에 대해 외견상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였다면(소위 prima facie case) 정당한 권리 또는 이익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전환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문제점이 제기 될 수 있다.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입증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신청인은 일체의 입증책임을 지지만 이에 관한 정보는 주로 피신청인의 인지에 있으므로 신청인의 입장에서 실제로 입증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대체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점에 대해 일단 외견상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면 (소위 prima facie case) 피신청인이 도메인이름에 대해 자신이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있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이에 대해 입증을 못할 경우 신청인은 규정 제4조 (a)(ii)를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간주된다.

(2) 피신청인은 사전적 용어인 일반 명사로 구성된 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가?

신청인이 도메인이름 등록에 대해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점을 소위 프리마 파시 (prima facie) 증거로 입증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규정 제4조의 C에 예시한 바와 같은 상황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비록 분쟁 도메인이름이 일반명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피신청인은 그 도메인이름에 대해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해당 표시의 저명도와 현재 상황, 피신청인이 다른 일반 명사도 등록하였는지 여부, 도메인이름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이 고려된다. 예를 들면 피신청인 해당도메인이름으로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도메인이름을 팔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자신의 상품이나 사업을 표

시하기 위해서 또는 해당 용어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를 빼앗으려는 의도 없이 그 단어의 일반적 가치로 부터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해당 도메인이름을 사용한다면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전매업자는 해당 도메인이름에 대해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가?

일반적으로 전매업자는 선의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그 사용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도메인이름에 정당한 이익을 갖는다. 그 요건에는 문제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할 것, 상표등록의 대상이 된 상품만을 판매하기 위해 사이트를 운영할 것 그리고 해당사이트에 상표권자와 도메인이름 등록인 간의 관계를 명백히 공개해야 할 것 등이다. 또한 피신청인의 경우 해당 상표로 이루어진 도메인이름으로 시장을 매점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러나 보다 협의로 상표권자의 명백한 허락 없이는 해당 상표권자의 제품을 전매할 수 있는 권리가 도메인이름에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라는 소수의견이 있다.

(4) 비판을 위한 사이트를 운영할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피신청인은 해당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해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갖는가?

이 문제는 순수한 비상업적 비판을 하기 위한 사이트와 관련하여 적용된다. UDRP 결정문 중에서 피신청인은 도메인이름은 언론의 자유를 위해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주장이 자주 보이나 행정패널들은 이를 상업적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이름이 순수한 비상업적 언론의 자유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 두 가지 견해가 엇갈린다.

첫 번째 견해는 비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서 해당 표지를 연상시키거나 등록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 또는 동일한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견해로는 해당 도메인이름이 비판을 암시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하고 비상업적으로 사용하기만 한다면 피신청인은 비판을 위한 사이트에 사용할 도메인이름에 상표를 포함시킬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본다.

(5) 유명인사의 팬클럽 사이트는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갖는가?

이 문제는 실제로 활동 중인 비상업적인 사이트에만 적용된다. UDRP 결정문 중에는 피신청인이 활동 중인 비상업적 팬 사이트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행정절차에서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있다.

첫째 견해는 활동중인 명백한 비상업적 팬 사이트는 신청인의 상표를 포함하는 도메인이름에 대해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견해에 따르면 더라고 해당 사이트는 비상업적이어야 하며 다른 공식사이트와는 명백히 구별되어야 한다.

두 번째 견해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스스로 해당 유명인사 개인이나 단체인 것처럼 기망하여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견해를 표현할 권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메인이름이 해당 상표와 동일한 경우, 피신청인은 상표권자가 자신의 표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인터넷상에서 그 표지를 관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다.

3. 부정한 목적의 존재 여부

마지막으로, 신청인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었고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정 제4조 (b)에 예시된 다음의 경우를 들어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이 부정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

- (i) 등록인이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인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경영자에게 해당 도메인이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서류에 의해 입증된 비용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기 위하여 해당 도메인이름을 판매, 대여, 또는 이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당 도메인이름을 등록 또는 취득한 경우
- (ii) 등록인이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로 하여금 그의 상표나 서비스표에 상응하는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기 위하여 해당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경우로서 해당 등록인이 그러한 방해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
- (iii) 등록인이 경영자의 사업을 방해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당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경우
- (iv)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을 이용함으로써 상업상의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그 웹사이트나 기타의 온라인 장소 또는 그 곳에 등장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후원관계, 거래상 제휴관계, 추천관계 등에 관하여 신청인의 상표나 서비스표 등과 혼동을 야기할 의도로 인터넷상의 이용자를 고의적으로 그 웹사이트 또는 기타의 온라인 장소로 유인한 경우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신청인이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있음을 입증하는데 다음의 문제가 제기 된다.

(1) 상표가 등록되기 전이나 커먼로상의 상표권을 얻기 전에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면 부정한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는가?

정상적인 경우 상표권이 생성되기 전에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면 등록인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신청인의 권리를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은 없으므로 도메인이름 등록에 부정한 목적이 없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존재를 명백히 인지하고 도메인이름 등록의 목적이 장래에 있을 신청인의 권리와 도메인이름 간의 동일성이나 유사성 때문에 야기되는 혼동을 이용하려는 것일 경우에는 부정한 목적이 있다. 특히 두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아직 새로운 상표권이 취득되기 전이거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잠재적인 권리를 인지하고서 신청인측 회사가 얻게 된 권리를 이용하기 위해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경우에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2) 도메인이름이 실제로 사용되지도 않았으며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해당 도메인이름을 실제로 매매하려고 시도하거나 상표권자에게 접촉하지도 않은 경우에 사용에 있어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는가? (소위 "소극적 보유" passive holding)

일반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다. 피신청인이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관련된 모든 상황들이 고려된다. 그 예로서 신청인이 유명상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피신청인이 분쟁해결신청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 경우, 해당 도메인이름을 선의로 사용하고 있다고 믿기 힘든 경우에는 부정한 목적을 암시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등록과 관련된 상황에서도 위와 같은 경우 부정한 목적이 추론될 수 있을 것이다.

(3)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가 동일한 이름의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의 유형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러한 유형의 행위에는 피신청인이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들을 여러 개 등록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같은 사건에 두개의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유형에 포함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4) 등록 및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있다는 근거로서 영미법상의 "의제인식" (擬制認識 constructive notice)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피신청인이 도메인이름 등록시에 신청인의 상표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영미법상의 의제인식의 개념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패널에 따라서는 미국에 등록된 상표에 대해 피신청인이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이 개념을 적용한 경우도 없지 않다. 이 경우 신청인의 상표 등록이 피신청인의 도메인 등록에 앞서 이루어 졌다면 피신청인은 해당 상표의 존재를 알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5) 분쟁도메인이름의 웹페이지에 기재한 권리포기나 책임면제(disclaimer)의 선언의 기능은 무엇인가?

일단 다른 요소들을 근거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면 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자신이 상표권자와는 관련이 없으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등 권리포기 또는 책임면제 (disclaimer)를 선언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목적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한다. 오히려 권리포기나 책임면제의 선언은 피신청인이 사전에 신청인의 상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암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권리포기나 책임면제 선언을 한 사실이 때로는 선의의 목적이거나 정당한 이익을 증명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다.

(6) 분쟁해결을 위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말들이 부정한 목적을 증명하는데 관련이 있는가?

분쟁 해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메인이름을 판매하려는 증거는 UDRP 체제하에서 채택될 수 있으며 이는 부정한 목적을 입증하는데 자주 이용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이버스쿼터들은 금전을 요구하기 전에 상표권자가 분쟁해결신청서를 제출할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이며 이 분쟁 해결과정에서 양보를 하려고 선의의 노력을 다하였는가 아니면 금전을 갈취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가름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이는 도메인이름의 매매를 제의한 사실이 부정한 목적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7)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부정한 목적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등록에 해당하는가?

도메인이름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새로운 등록에 해당하지만 단순히 자신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갱신하는 것은 부정한 목적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등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에 있어 부정한 목적은 현재의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을 취득한 시점에 존재한다.

4. 기타 행정절차에 관한 문제

(1) 과거 유사한 사실관계와 법률쟁점을 다룬 UDRP 결정들이 추후의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일반적으로 UDRP 체계 하에서는 엄격한 선례구속성의 원칙 (a doctrine of precedent) 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체로 유사한 사실관계와 상황을 다룬 이전의 결정들과 추후의 결정이 일치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UDRP 체계가 각 당사자들에게 공평하고 효율적이며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행정패널이 요구하지 않은 추가적 보충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 이것도 채택되는가?

일반적으로 행정패널은 양 당사자를 동등하게 대할 의무를 지며 각 당사자가 사건에 대해 진술하는데 있어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반면, 요구하지 않은 추가적 보충서면 제출에 대해서 재량으로 수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보충서면을 제출한 당사자가 해당 사건과 보충 서면이 어떤 관련이 있으며 왜 신청서 또는 답변서 제출시에 진술과 증거를 함께 제출하지 못하였는지를 설명한다면 채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행정패널이 일방당사자가 제출한 추가적 보충 서면을 채택할 경우 타방 당사자에게도 해당 보충 서면에 대해 반박할 기회를 줄 것이다.

반면 소수의 견해로서 행정패널이 추가적 보충서면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결정을 내릴 때 이를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도 없지 않다.

(3) 행정절차에 사용할 언어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행정절차의 언어는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등록약관에 사용된 언어이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명백히 분쟁해결신청서의 언어를 이해하고 있는 경우나 신청인이 번역을 강제한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등록 약관상의 언어와는 다를지라도 신청서에 사용된 언어가 행정절차의 언어로 될 수 있다.

(4) 행정패널은 어떤 경우에 분쟁해결의 재신청을 받아들이는가?

분쟁해결의 재신청은 과거에 기각된 바 있는 신청서의 내용과 동일한 도메인이름 및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두 번째의 분쟁해결 신청을 말한다. 이러한 재신청 사건은 제한된 경우에만 수락된다. 예를 들면 원래의 결정이 있은 후 연계된 새로운 일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적법절차나 실제적 정의에 반하는 일이 있었거나 원래 결정에서 패널 위원이나 당사자들이 심각한 위법행위를 행했다고 신청인이 신청서에서 주장하는 경우 등이다. (그 예로서 증거조작 등) 재신청은 또한 원래 사건에서는 신청인이 확보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제시한 경우에도 받아들일 것이다.

(5) 패널은 결정을 내릴 때 개인적인 리서치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패널은 피신청인과 도메인이름의 사용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분쟁 도메인이름과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다. 또한 패널은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공개된 자료에 대해 제한적으로 리서치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패널이 결정을 내리는데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당사자에게 패널 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6) 피신청인이 신청서에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신청인이 청구한 구제수단들이 수락되는가?

일반적으로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신청인에

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패널은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부정적으로 추론할 여지는 있지만 신청인은 UDRP 행정절차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규정 제4조 (a)에서 요구하는 세 가지 요건을 주장하고 충분히 입증하여야 한다.

첨부 1.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UDRP)

제4조. 의무적 행정 절차.

동 조항은 등록인이 의무적 행정절차에 응하여야 하는 분쟁의 형태를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분쟁해결 절차는 www.icann.org/udrp/aproved-providers.htm에서 열거하는 분쟁해결서비스 제공 기관들(이하 각각은 '분쟁해결기관'이라 한다.)중에서 한 분쟁해결기관에 의해 진행된다.

a. 적용 대상이 되는 분쟁

제3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분쟁해결기관에 대하여 절차규칙에 따라 다음 각호에 열거된 사항을 이유로 한 분쟁해결신청을 한 경우에 등록인은 분쟁해결절차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i)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 (ii) 등록인이 해당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신청인은 동 규정에 따라서 분쟁해결을 신청함에 있어서 앞에 열거된 세 가지 사항 모두를 입증하여야 한다.

b. 부정한 목적의 등록 및 사용의 증거

제4조 (a)(iii)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여부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조정부가 판단한 경우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이 부정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 것으로 본다.

(i)등록인이상표권자나서비스표권자인신청인또는신청인의 경업자에게 해당 도메인이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서류에 의해 입증된 비용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기 위하여 해당 도메인이름을 판매, 대여, 또는 이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당 도메인이름을 등록 또는 취득한 경우

(ii)등록인이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로 하여금 그의 상표나 서비스표에 상응하는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기 위하여 해당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경우로서 해당 등록인이 그러한 방해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

(iii) 등록인이경업자의 사업을 방해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당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경우

(iv)등록인이 도메인이름을 이용함으로써 상업상의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그 웹사이트나 기타의 온라인 장소 또는 그 곳에 등장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후원관계, 거래상 제휴관계, 추천관계 등에 관하여 신청인의 상표나 서비스표 등과 혼동을 야기할 의도로 인터넷상의 이용자를 고의적으로 그 웹사이트 또는 기타의 온라인 장소로 유인한 경우

c. 분쟁해결신청에 대한 등록인의 해당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 및 정당한 이익의 입증방법

등록인이 신청서를 수령한 경우 어떻게 답변을 준비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절차규칙 제5조를 참조하여야 한다. 조정부는 제출된 모든 증거 자료를 근거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여부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특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4조 (a)(ii)의 규정의 취지에 따라 등록인이 해당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것을 입증한 것으로 본다.

(i)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의 통지를 받기 전에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부정한 목적없이 해당 도메인이름 또는 이에 대응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거나 그 사용을 위한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경우

(ii) 등록인(개인, 기업이나 기타 단체로서)이 비록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을 갖고 있지는 않더라도 해당 도메인이름으로 일반에 널리 인식되고 있었던 경우

(iii) 등록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해당 도메인이름을 사용해서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문제시된 상표나 서비스표를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비상업적 사용 또는 공정한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

첨부 2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 사무소)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UDRP)에 따른 신청서

본 양식은 1999년 10월 24일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승인한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이하 "규정"이라 함)과 1999년 10월 24일 ICANN이 승인한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 조정 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그리고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의 보충 규칙 (이하 "보충 규칙"이라 칭함)에 따라 ADNDRC의 서울 사무소에 조정 신청 시 사용됩니다.

(주: 이 양식의 일부 항목이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표시 바랍니다.)

절차를 주관할 ADNDRC 사무소 선택

조정 신청인은 이로써 본 신청서에 언급된 도메인이름 분쟁 절차를 주관할 기관으로 ADNDRC의 서울 사무소를 선택하는 바입니다.

1. 분쟁 대상 도메인이름(들) (전체명칭을 기재해야 합니다.)

(기록난이 부족할 경우, 별도의 A4 용지에 동일 양식으로 작성하여 첨부 바랍니다.)

- | | | |
|----------|----------|----------|
| 1. _____ | 4. _____ | 7. _____ |
| 2. _____ | 5. _____ | 8. _____ |
| 3. _____ | 6. _____ | 9. _____ |

2. 도메인이름이 등록된 등록 기관의 명칭과 자세한 연락처를 기재하십시오.

3. 신청인이 선호하는 연락 방법

(상자 안에 체크 표시를 하십시오.)

Email
우편
팩스

피 신청인이 선호하는 연락 방법

(상자 안에 체크 표시를 하십시오.)

Email
우편
팩스

4. 당사자 세부 사항 (신청인이 한 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도의 A4 용지에 각자의 세부 연락처를 기록하고 어느 도메인 주소와 관련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표기바랍니다. 피 신청인이 한 명이상일 경우 별도로 양식 C를 사용해 주십시오.)

신청인:

성명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팩스 _____
Email _____
법적 지위 _____
사업자 등록 장소 _____
주 사업 장소 _____

피 신청인:

성명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팩스 _____
Email _____
법적 지위 _____
사업자 등록 장소 _____
주 사업 장소 _____

위임 받은 대리인 (있는 경우에 한함)

성명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팩스 _____
Email _____

위임 받은 대리인 (있는 경우에 한함)

성명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팩스 _____
Email _____

5.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회사를 피신청인으로 지정한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본 신청서에 데이터베이스 검색 사본을 첨부하십시오.)

6. 본 소송의 대상인 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달리 법률 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나 종료된 적이 있는지 여부를 기록 바랍니다. (근거 서류를 첨부하십시오.)

7. 조정 신청 이유 (조정 신청서가 근거로 한 상표나 서비스 마크를 명기하고, 현재 이러한 상표나 서비스 마크를 사용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각각 기술하십시오. 가능하다면, 등록 증명서 사본들을 첨부하십시오.)

8. 조정을 신청하게 된 사실적 근거와 법률적 근거를 간략하게 요약하십시오. (3,000 단어 미만)

9. 원하는 구제 방안

10. 신청인은 본 조정 신청에서 1인 / 3인 조정부를 선임합니다. (* 필요 시 삭제)

11. 제안할 3명의 조정인이 있는 경우, 명단과 자세한 연락 정보를 기재하십시오.

1. _____
2. _____
3. _____

12. ICANN 정책에 의거한 등록약관 (등록기관의 등록약관, 본 답변서에 사본을 첨부바랍니다.)

13. 본 조정 신청서 사본을 조정 신청서 전송문표지(CTC, Complaint Transmittal Cover Sheet)와 함께
피 신청인 측과 해당 등록 기관에 우송 또는 전송하였습니까? 예 / 아니오* (*필요 시 삭제)
(우송이나 전송한 근거 서류를 첨부 바랍니다.)

(vi) 어느 일방이 발신하는 모든 통신 사본은 상대방과 ADNDRC 서울사무소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16. 확인서

아래 신청인은 도메인이름 등록에 관한 주장과 구제 대책 또는 분쟁 해결이 오로지 도메인이름을 보유한 회사만을 상대로 한 것이며, 모든 주장과 구제 방안이, 의도적인 악행이 없는 한, (a) ADNDRC이나 그 사무소 또는 조정부, (b) 등록 기관, (c) 등록업무 행정 담당자, (d)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및 동 기구의 임원, 직원, 고용인, 및 대리점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래 신청인은 본 조정 신청서에 포함된 정보가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완벽하고 정확한 것이고, 타인에 해를 끼치는 등의 부적절한 의도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본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주장은 규칙과 해당 법률에 비추어 정당할 뿐 아니라, 신의와 합리적인 논리에 근거한 것임을 정히 확인하는 바입니다.

서명: _____

일자: _____

서명자 성명 및 직책 (활자체로 기입): _____

II. ADNDRC 답변서(국문)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정당한 권리와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분쟁해결신청서에서 제기한 진술과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도메인이름에 대해 자신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주장하는 근거를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은 절차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분쟁해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절차규칙 제 5조 (a))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서를 수령한 경우 어떻게 답변을 준비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절차규칙 제5조를 참조하여 첨부 자료 3의 답변서에 빈칸을 채우는 방법으로 작성하면 된다.

우선 피신청인은 답변서 작성에 있어 신청서에서 제기된 진술과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작성 시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법률 쟁점인 규정 제4조 (a) (i) 도메인이름과 상표의 유사성여부, (ii)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와 정당한 이익 존재여부, (iii) 부정한 목적의 존재 여부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답변서 작성에서도 신청서 작성 시에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서 피신청인 자신의 도메인이름에 대해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피신청인은 규정 제4조 (c)에서 예시하는 사항을 주장하고 입증하면 된다.

1. 상표와 도메인이름 간에 동일 또는 유사성 여부

첫째,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입증하여야 한다. 동일 또는 유사성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1) 분쟁도메인이름과 동일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를 보유한 사실만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가?

일반적으로 신청인이 해당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등록하고 소유하고 있다면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표지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상표 등록 장소와 등록 대상이 된 상품 및 서비스의 소재지는 관련이 없다. 그러나 아주 예외적으로 상표 등록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경우 상표등록의 정확을 검토해야 할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상표등록의 경우, 연방 관할에 반하여 주정부에서 상표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2)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웹사이트의 내용도 관련이 있는가?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분쟁도메인이름 등록인의 웹사이트의 내용이 상표권자의 사업과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이 경우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여부는 상표와 도메인이름과 비교하여 판단될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잠재적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이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분쟁 도메인이름을 타이핑할 경우에 상표권자의 사이트에 직접 접근할 수 없게 되므로 상표권자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3) 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상표에 욕설과 같은 부정적인 용어를 붙여 이루어진 경우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것으로 볼 것인가?

일반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상표에 욕설과 같은 부정적 단어를 결합하여 구성된 경우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것으로 본다. 대체로 도메인이름의 주요부분이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고 부정적 단어는 별다른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소수의 견해로 인터넷 이용자는 상표와 부정적 단어로 결합된 도메인이름으로부터 상표권자를 연상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예도 없지 않다.

(4)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후에 신청인이 해당 표지에 대해 상표를 등록하거나 권리를 취득한 경우 신청인은 UDRP 체제 상에도 상표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신청인이 상표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피신청인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는 사실 만으로 동일성이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유사성을 주장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UDRP 체제에서는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가 언제 권리를 취득해야 하는지 명백히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장래에 상표가 등록될 것을 염두에 두고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는 점은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며,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었다는 점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5) 신청인은 지리적 위치를 지정하는 단어나 용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UDRP체제하에서는 지리적 위치를 지정하는 용어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 한편, 해당 지리상의 용어에 대해 신청인이 권리를 취득하였다거나 상표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보호받게 된다. 그러나 신청인 측에서 지리상의 용어를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차적 의미로서 권리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6) 신청인은 자신의 이름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UDRP체제는 개인의 이름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지 않지만, 미등록 상태지만 개인의 이름이 상거래나 상행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신청인은 그 이름에 대해 소위 커먼로 상의 권리를 갖는 수가 있다. 이 경우 커먼로 상의 상표도용에 관한 소송에서 요구되는 기준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물론 UDRP 체제하에서도 개인이름이 상표로 등록된 경우에는 보호받는다.

그러나 미등록 상태에 있는 개인의 이름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문제된 이름이 상거래나 상행위에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 단지 사업가나 종교지도자 등이 널리 알려진 이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미등록 상표로서 권리를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7) 미등록된 상표 또는 커먼로상의 상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신청인은 무엇을 입증하여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신청인이 자신이나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문제의 표지가 식별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차적 의미의 식별력의 증거로서 해당 표지를 이용하여 판매한 기간과 양, 광고의 성격과 효과, 소비자 조사 및 미디어의 인지도 등이 포함된다. 이차적 의미가 비록 일부 지역에 극한 된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인의 커먼로상 상표권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미등록 상표에 관한 권리는 분쟁해결신청이 대륙법계 지역에서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장할 수 있다.

(8) 상표 사용권자나 상표권자와 연계된 회사는 UDRP 체제하에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갖는가?

일반적으로 상표 사용권자 그리고 등록된 상표권자의 자회사나 모회사는 UDRP 체제하에서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비독점 상표 사용권자인 경우에는 UDRP 체제하에서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않는다는 소수의견도 있다.

2. 도메인이름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의 존재 여부

피신청인은 자신의 도메인이름에 대해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피신청인은 규정 제4조 (c)에서 예시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장하고 입증하면 된다.

(i)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의 통지를 받기 전에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부정한 목적 없이 해당 도메인이름 또는 이에 대응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거나 그 사용을 위한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경우

(ii) 등록인(개인, 기업이나 기타 단체로서)이 비록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을 갖고 있지는 않더라도 해당 도메인이름으로 일반에 널리 인식되고 있었던 경우

(iii) 등록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해당 도메인이름을 사용해서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문제시된 상표나 서비스표를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비상업적 사용 또는 공정한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

주의하여야 할 점은 신청인이 등록인이 해당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해 외견상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였다면 (소위 prima facie case) 정당한 권리 또는 이익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전환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문제점이 제기된다.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입증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신청인은 일체의 입증책임을 지지만 이에 관한 정보는 주로 피신청인의 인지 하에 있으므로 신청인의 입장에서 실제로 입증하기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대체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점에 대해 일단 외견상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면 (소위 prima facie case) 입증책임이 전환하여 피신청인이 도메인이름에 대해 자신이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있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이에 대해 입증을 못할 경우 신청인은 규정 제4조 (a)(ii)를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간주된다.

(2) 피신청인은 사전적 용어인 일반 명사로 구성된 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가?

신청인이 도메인이름 등록에 대해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점을 소위 프리머 페이스 (prima facie) 증거로 입증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규정 제4조의 C에

예시한 바와 같은 상황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비록 분쟁 도메인이름이 일반명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피신청인은 그 도메인이름에 대해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해당 표시의 저명도와 현재 상황, 피신청인이 다른 일반 명사도 등록하였는지 여부, 도메인이름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이 고려된다.

예를 들면 피신청인 해당도메인이름으로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도메인이름을 팔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자신의 상품이나 사업을 표시하기 위해서 또는 해당 용어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를 빼앗으려는 의도 없이 그 단어의 일반적 가치로부터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해당 도메인이름을 사용한다면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전매업자는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가?

일반적으로 전매업자는 선의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그 사용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도메인이름에 정당한 이익을 갖는다. 그 요건에는 문제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할 것, 상표등록의 대상이 된 상품만을 판매하기 위해 사이트를 운영할 것 그리고 해당사이트에 상표권자와 도메인이름 등록인 간의 관계를 명백히 공개해야 할 것 등이다. 또한 피신청인의 경우 해당 상표로 이루어진 도메인이름으로 시장을 매점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러나 보다 협의로 상표권자의 명백한 허락 없이는 해당 상표권자의 제품을 전매할 수 있는 권리가 도메인이름에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라는 소수의견이 있다.

(4) 비판을 위한 사이트를 운영할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피신청인은 해당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해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갖는가?

이 문제는 순수한 비상업적 비판을 하기 위한 사이트와 관련하여 적용된다. UDRP 결정문 중에서 피신청인은 도메인이름은 언론의 자유를 위해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주

장이 자주 보이나 행정패널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실제로 상업적 이득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 이름이 순수한 비상업적 언론의 자유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 두 견해가 엇갈린다.

첫 번째 견해는 비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서 해당 표지를 연상시키거나 등록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 또는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견해로는 해당 도메인 이름이 비판을 암시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하고 비상업적으로 사용하기만 한다면 피신청인은 비판을 위한 사이트에 사용할 도메인 이름에 상표를 포함시킬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본다.

(5) 유명인사의 팬클럽 사이트는 분쟁도메인 이름에 대해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갖는가?

이 문제는 실제로 활동 중인 비상업적인 사이트에만 적용된다. UDRP 결정문 중에는 피신청인이 활동 중인 비상업적 팬 사이트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있다.

첫째 견해는 활동 중인 명백한 비상업적 팬 사이트는 신청인의 상표를 포함하는 도메인 이름에 대해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견해에 따르면 더러라고 해당 사이트는 비상업적이어야 하며 다른 공식사이트와는 명백히 구별되어야 한다.

두 번째 견해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자신이 해당 유명인사 개인이나 단체인 것처럼 기망하여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비록 그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견해를 표현할 권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메인 이름이 해당 상표와 동일한 경우, 피신청인은 상표권자가 자신의 표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인터넷상에서 그 표지를 관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다.

3. 부정한 목적의 존재 여부

마지막으로, 피신청인은 자신이 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고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규정 제4조 (b)에 예시된 다음의 경우를 들어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이 부정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i) 등록인이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인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경영자에게 해당 도메인이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서류에 의해 입증된 비용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기 위하여 해당 도메인이름을 판매, 대여, 또는 이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당 도메인이름을 등록 또는 취득한 경우
- (ii) 등록인이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로 하여금 그의 상표나 서비스표에 상응하는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기 위하여 해당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경우로서 해당 등록인이 그러한 방해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
- (iii) 등록인이 경영자의 사업을 방해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당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경우
- (iv)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을 이용함으로써 상업상의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그 웹사이트나 기타의 온라인 장소 또는 그 곳에 등장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후원관계, 거래상 제휴관계, 추천관계 등에 관하여 신청인의 상표나 서비스표 등과 혼동을 야기할 의도로 인터넷상의 이용자를 고의적으로 그 웹사이트 또는 기타의 온라인 장소로 유인한 경우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신청인이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있음을 입증하는데 다음의 문제가 제기된다.

(1) 상표가 등록되기 전이나 커먼로 상의 상표권을 얻기 전에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였다면 부정한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는가?

정상적인 경우 상표권이 성립되기 전에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였다면 등록인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신청인의 권리를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은 없으므로 도메인 이름 등록에 부정한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존재를 명백히 인지하고 도메인 이름 등록의 목적이 장래에 있을 신청인의 권리와 도메인 이름 간의 동일성이나 유사성 때문에 야기되는 혼동을 이용하려는 것이 입증되면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 특히 두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아직 새로운 상표권이 취득되기 전이거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잠재적인 권리를 인지하고서 신청인측 회사가 얻게 될 권리를 이용하기 위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경우에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피신청인이 도메인 이름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해당 도메인 이름을 매매하려고 시도하려고 상표권자에게 접촉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에 있어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는가? (소위 "소극적 보유" passive holding)

일반적으로 피신청인이 도메인 이름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피신청인이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관련된 모든 상황들이 고려된다. 그 예로서 신청인이 유명상표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피신청인이 분쟁해결신청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 경우, 해당 도메인 이름을 선의로 사용하고 있다고 믿기 힘든 경우에는 부정한 목적을 암시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등록과 관련된 상황에서도 위와 같은 경우 부정한 목적이 추론될 수 있을 것이다.

(3)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가 동일한 이름의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는 것을 방해하는 피신청인의 행위의 유형은 어떤 것일까?

이러한 유형의 행위에는 피신청인이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들을 여러개 등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같은 사건에 두개의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유형에 포함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4) 등록 및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있다는 근거로서 영미법상의 "의제인식" (擬制認識 constructive notice)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피신청인이 도메인이름 등록 시에 신청인의 상표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영미법상의 의제인식의 개념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패널에 따라서는 미국에 등록된 상표에 대해 피신청인이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이 개념을 적용한 경우도 없지 않다. 이 경우 신청인의 상표 등록이 피신청인의 도메인 등록에 앞서 이루어 졌다면 피신청인은 해당 상표의 존재를 알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5) 분쟁도메인이름의 웹페이지에 기재한 권리포기나 책임면제(disclaimer)의 선언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일단 다른 요소들을 근거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면 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상표권자와는 관련이 없으며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과 관련하여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등 권리포기 또는 책임면제 (disclaimer)를 선언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목적이 치유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권리포기나 책임면제의 선언은 피신청인이 사전에 신청인의 상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암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권리포기나 책임면제 선언을 한 사실이 때로는 선의의 목적이나 정당한 이익을 증명하는데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다.

(6) 분쟁해결을 위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말들이 부정한 목적을 증명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가?

분쟁 해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메인이름을 판매하려는 증거는 UDRP 체제하에서 채택될 수 있으며 이는 부정한 목적을 입증하는데 자주 이용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이버스쿼터들은 금전을 요구하기 전에 상표권자가 분쟁해결신청서를 제출할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이며 이 분쟁 해결과정에서 양보를 하려고 선의의 노력을 다했는가 아니면 금전을 갈취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보였는지를 평가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즉, 이는 도메인이름의 매매를 제의한 사실이 부정한 목적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7)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부정한 목적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이 되는 등록에 해당하는가?

도메인이름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새로운 등록에 해당하지만 단순히 자신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갱신하는 것은 부정한 목적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등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에 있어 부정한 목적은 현재의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을 취득한 시점에 존재한다.

4. 기타 행정절차에 관한 문제

(1) 과거 유사한 사실관계와 법률쟁점을 다룬 UDRP 결정들이 추후의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일반적으로 UDRP 체계 하에서는 엄격한 선례구속성의 원칙 (a doctrine of precedent)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체로 유사한 사실관계와 상황을 다룬 이전의 결정들과 추후의 결정이 일치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UDRP 체계가 각 당사자들에게 공평하고 효율적이며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행정패널이 요구하지도 않은 추가적 보충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이 보충 서면도 채택되는가?

일반적으로 행정패널은 양 당사자를 동등하게 대할 의무를 지며 각 당사자가 사건에 대해 진술하는데 있어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반면, 요구하지 않은 추가적 보

충서면 제출에 대해서 재량으로 수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만일 보충서면을 제출한 당사자가 해당 사건과 보충 서면이 어떤 관련이 있으며 왜 신청서 또는 답변서 제출시에 진술과 증거를 함께 제출하지 못하였는지를 설명한다면 채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행정패널이 일방당사자가 제출한 추가적 보충 서면을 채택할 경우 타방 당사자에 게도 해당 보충 서면에 대해 반박할 기회를 줄 것이다.

반면 소수의 견해로서 행정패널이 추가적 보충서면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결정을 내릴 때 이를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도 없지 않다.

(3) 행정절차에 사용할 언어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행정절차의 언어는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등록약관에 사용된 언어이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명백히 분쟁해결신청서의 언어를 이해하고 있는 경우나 신청인이 번역을 강제한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등록 약관상의 언어와는 다를지라도 행정절차의 언어는 신청서에 사용된 언어가 될 수도 있다.

(4) 행정패널은 어떤 경우에 분쟁해결의 재신청을 받아들이는가?

분쟁해결의 재신청은 과거에 기각된 바 있는 신청서의 내용과 동일한 도메인이름 및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두번째의 분쟁해결 신청을 말한다. 이러한 재신청 사건은 제한된 경우에만 수용된다. 예를 들면 원래의 결정이 있은 후 연계된 새로운 일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적법절차나 실제적 정의에 반하는 일이 있었거나 원래 결정에서 패널 위원이나 당사자들이 심각한 위법행위를 행했다고 신청인이 신청서에서 주장하는 경우 등이다. (그 예로서 증거조작 등) 재신청은 또한 원래 사건에서는 신청인이 확보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제시한 경우에도 받아들일 것이다.

(5) 패널은 결정을 내릴 때 개인적인 리서치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패널은 피신청인과 도메인이름의 사용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분쟁 도메인이름과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다. 또한 패널은 결정을 내

리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공개된 자료에 대해 제한적이거나 리서치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패널이 결정을 내리는데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당사자에게 패널 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6) 피신청인이 신청서에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신청인이 청구한 구제수단들이 수락되는가?

일반적으로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신청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패널은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부정적으로 추론할 여지는 있지만 신청인은 UDRP 행정절차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규정 제4조 (a)에서 요구하는 세가지 요건을 주장하고 충분히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첨부 1.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UDRP)

제4 조. 의무적 행정 절차.

동 조항은 등록인이 의무적 행정절차에 응하여야 하는 분쟁의 형태를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분쟁해결절차는 www.icann.org/udrp/approved-providers.htm에서 열거하는 분쟁해결서비스 제공 기관들(이하 각각은 '분쟁해결기관'이라 한다.)중에서 한 분쟁해결기관에 의해 진행된다.

a. 적용 대상이 되는 분쟁

제3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분쟁해결기관에 대하여 절차규칙에 따라 다음 각호에 열거된 사항을 이유로 한 분쟁해결신청을 한 경우에 등록인은 분쟁해결절차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i)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 (ii) 등록인이 해당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신청인은 동 규정에 따라서 분쟁해결을 신청함에 있어서 앞에 열거된 세 가지 사항 모두를 입증하여야 한다.

b. 부정한 목적의 등록 및 사용의 증거

제4조 (a)(iii)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여부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조정부가 판단한 경우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이 부정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 것으로 본다.

(i) 등록인이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인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경업자에게 해당 도메인이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서류에 의해 입증된 비용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기 위하여 해당 도메인이름을 판매, 대여, 또는 이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당 도메인이름을 등록 또는 취득한 경우

(ii) 등록인이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로 하여금 그의 상표나 서비스표에 상응하는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기 위하여 해당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경우로서 해당 등록인이 그러한 방해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

(iii) 등록인이 경업자의 사업을 방해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당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경우

(iv)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을 이용함으로써 상업상의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그 웹사이트나 기타의 온라인 장소 또는 그 곳에 등장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후원관계, 거래상 제휴관계, 추천관계 등에 관하여 신청인의 상표나 서비스표 등과 혼동을 야기할 의도로 인터넷상의 이용자를 고의적으로 그 웹사이트 또는 기타의 온라인 장소로 유인한 경우

c. 분쟁해결신청에 대한 등록인의 해당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 및 정당한 이익의 입증방법

등록인이 신청서를 수령한 경우 어떻게 답변을 준비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절차규칙 제5조를 참조하여야 한다. 조정부는 제출된 모든 증거 자료를 근거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여부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특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4조 (a)(ii)의 규정의 취지에 따라 등록인이 해당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것을 입증한 것으로 본다.

(i)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의 통지를 받기 전에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부정한 목적 없이 해당 도메인이름 또는 이에 대응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거나 그 사용을 위한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경우

(ii) 등록인(개인, 기업이나 기타 단체로서)이 비록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을 갖고 있지는 않더라도 해당 도메인이름으로 일반에 널리 인식되고 있었던 경우

(iii) 등록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해당 도메인이름을 사용해서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문제시된 상표나 서비스표를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비상업적 사용 또는 공정한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

첨부 2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절차규칙 제5조

5. 답변서

(a) 피신청인은 절차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분쟁해결기관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b) 답변서는 문서 및 전자매체(첨부서류로서 첨부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의 두 가지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i) 분쟁해결 신청서에 포함된 진술과 주장의 내용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고 피신청인(도메인 이름 보유자)이 분쟁대상인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답변서의 이 부분은 분쟁해결기관이 정하는 보충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문자 수 또는 페이지수의 제한에 따라야 한다)
- (ii) 피신청인 및 분쟁해결절차에 있어서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의 성명, 이름, 우편 및 전자우편주소, 전화, 팩스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iii) 분쟁해결절차에 있어서 피신청인에게로의 (A) 전자적 자료 (B) 문서를 포함한 자료 각각에 대한 선호하는 통신방법(통신담당자, 매체, 주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을 명기하여야 한다.
- (iv) 신청인이 분쟁해결 신청서에서 1인 조정부를 선택(제3조(b)(iv)의 규정 참조)한 경우에, 피신청인은 그 대신 3인 조정부를 선택할 것인지의 여부를 진술하여야 한다.
- (v)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3인 조정부를 선택한 경우에는 3인의 조정인(국제인터넷주소관리 기구가 승인한 모든 분쟁해결기관의 조정인 명부로부터 선택할 수 있다)중 1인으로 선정될 후보자 3인의 이름과 상세한 통신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 (vi) 분쟁해결 신청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지금까지 개시되었거나 종결된 다른 모든 법적 소송을 특정하여야 한다.
- (vii) 제2조(b)의 규정에 따라 답변서의 사본이 신청인에 대하여 송부 또는 발신되었다는 것을 진술하여야 한다.
- (viii) 다음과 같은 진술이후에 피신청인이나 그 권한있는 대리인의 서명으로 끝맺음을 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이 답변서에 기재되고 있는 정보는 피신청인이 아는 한도 내에서 완전하고 정확한 것이고, 답변서가 타인에 해를 끼치는 등의 부적절한 의도로 제출된 것이 아니며, 현재 또는 선의 및 합리적인 논거에 의해서 보완될 답변서상의 주장은 동 절차규칙과 준거법에 따른 것임을 보증합니다.”; 그리고

(ix) 피신청인이 신뢰하고 있는 문서증거 또는 기타의 증거 모두를 증거 일람표와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c) 신청인이 1인 조정부에 의해서 분쟁해결이 결정되도록 선택하고 피신청인이 3인 조정을 선택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분쟁해결기관이 정하는 보충규칙에 따라 3인 조정부 수수료의 절반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수수료의 납부는 분쟁해결기관에로의 답변서의 제출과 동시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수수료의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분쟁은 1인 조정부에 의하여 심리된다.

(d) 분쟁해결기관은, 피신청인의 청구가 있으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답변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출기한은 양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고, 분쟁해결기관이 그 서면에 의한 합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연장될 수 있다.

(e) 조정부는 만약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해결 신청서에 기초하여 그 분쟁에 대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첨부 3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서울사무소)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UDRP)에 따른 답변서

본 양식은 1999년 10월 24일 국제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ICANN)가 승인한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과 1999년 10월 24일 ICANN이 승인한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 조정규정을 위한 절차규칙(이하 "절차규칙"이라 함) 그리고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의 보충 규칙 (이하 "보충 규칙"이라 칭함)에 따라 ADNDRC의 서울사무소에 제출된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서로 사용됩니다.

(주: 이 양식의 일부 항목이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표시 바랍니다.)

1. 분쟁 대상 도메인이름(들) (전체 명칭을 기재해야 합니다.)

(기록난이 부족할 경우, 별도의 A4 용지에 동일 양식으로 작성하여 첨부 바랍니다.)

- | | | |
|----------|----------|----------|
| 1. _____ | 4. _____ | 7. _____ |
| 2. _____ | 5. _____ | 8. _____ |
| 3. _____ | 6. _____ | 9. _____ |

2. 도메인이름이 등록된 등록 기관의 명칭과 자세한 연락처를 기재하십시오.

3. 피 신청인이 선호하는 연락 방법

(상자 안에 체크 표시를 하십시오.)

- Email
우편
팩스

신청인이 선호하는 연락 방법

(상자 안에 체크 표시를 하십시오.)

- Email
우편
팩스

4. 당사자 세부 사항 (신청인이나 피 신청인이 한 명이상일 경우에는 별도의 A4 용지에 각자의 세부 연락처를 기록하고 어느 도메인 주소와 관련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표기바랍니다.)

피 신청인:

성명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팩스 _____

Email _____

법적 지위 _____

사업자 등록 장소 _____

주 사업 장소 _____

신청인:

성명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팩스 _____

Email _____

법적 지위 _____

사업자 등록 장소 _____

주 사업 장소 _____

위임 받은 대리인 (있는 경우에 한함)

성명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팩스 _____

Email _____

위임 받은 대리인 (있는 경우에 한함)

성명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팩스 _____

Email _____

5. 조정 신청 대상 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달리 법률 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나 종료된 적이 있는지 여부를 기록 바랍니다. (근거 서류를 첨부 바랍니다.)

6. 조정 신청의 전체 또는 일부 사유에 대한 확증이나 부인 근거를 기술하십시오.

7. 조정 신청 사유가 사실 무근이라는 사실적 근거와 법률적 근거를 간략하게 요약하십시오.
(3,000 단어 미만)

8. 원하는 구제 방안

9. 피 신청인은 본 조정 신청에서 1인 / 3인 조정부를 선임합니다. (* 필요시 삭제)

10. 제안할 3명의 조정인이 있는 경우, 명단과 자세한 연락 정보를 기재하십시오.

1. _____
2. _____
3. _____

11. ICANN 정책에 의거한 등록약관 (등록기관의 등록약관, 본 답변서에 사본을 첨부바랍니다.)

12. 본 답변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우송하거나 전송하였습니까?

(우송이나 전송한 근거 서류를 첨부 바랍니다.) 예 / 아니오* (*필요 시 삭제)

13. 본 건과 관련된 기타 세부 사항

14. 추가 정보

- (i) 본 답변서는 행정 처리 시행일 (보충 규칙 제6(1)조 참조)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 (ii) 본 답변서의 내용을 입증하는 모든 서류와 서류 색인 목록을 첨부하십시오.
- (iii) 답변서를 하드 카피 (보충 규칙 제3(2)조 참조)와 전자파일 형식으로 동시에 작성하여 ADNDRC 서울사무소의 아래 주소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11 한솔M.COM 빌딩 11층
전화: (822) 2186 4564
팩스: (822) 2186 4494
Email: kidrc@adndrc.org

- (iv) 해당되는 경우에는 절차규칙 5(c)항과 보충 규칙 제15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입하십시오.
- (v) 본 답변서를 작성할 때 다음 문서들을 참조 하십시오.

ICANN의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이하 "규정"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절차규칙 (이하 "절차규칙"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ADNDRC의 보충 규칙 (이하 "보충 규칙"이라 함)

- (vi) 어느 일방이 발신하는 모든 통신 사본은 상대방과 ADNDRC 서울사무소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 (vii) 본 답변서를 해당 등록 기관에 송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15. 확인서

피신청인은, 이 답변서에 기재되고 있는 정보는 피신청인이 아는 한도 내에서 완전하고 정확한 것이고, 답변서가 타인에 해를 끼치는 등의 부적절한 의도로 제출된 것이 아니며, 현재 또는 선의 및 합리적인 논거에 의해서 보완될 답변서상의 주장은 동 절차규칙과 준거법에 따른 것임을 보증합니다.

서명: _____

일자: _____

서명자 성명 및 직책 (활자체로 기재): _____